

03 공급자적합성확인

Q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에 나와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 한다)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검사를 하여야 한다.
- ③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안전기준이 없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④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는 도형 또는 기호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⑤ 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별도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방법에 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⑦ 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영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무엇인가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 것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을 말합니다.

대상품목	적용안전기준	
1.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를 포함)	· 어린이용 안경테 (선글라스를 포함한다)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용 물안경	· 어린이용 물안경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용 스키용구	· 어린이용 스키용구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용 스노보드	· 어린이용 스노보드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쇼핑카트 부속품	· 쇼핑카트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용 장신구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용 킥보드	· 어린이용 킥보드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용 가구	· 어린이용 가구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아동용 섬유제품	·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2.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기타 어린이제품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품목별 적용 안전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 → 정책 → 제품안전 → 안전기준열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에 나와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관련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 공급자격합성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급자격합성확인은 ① 시험기관에 시험·검사 ② 제조·수입업자 자체 제품시험을 진행하여 공급자 스스로 제품 안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품의 안전을 확인한 제품은 확인서를 즉시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 공급자격합성확인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 공급자격합성확인 확인방법(택일)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성적서, 자체 시험성적서, 원부자재 업체의 시험성적서, 외국인 공인기관 또는 기업의 시험성적서, 기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 공급자격합성확인

✓ 별지 제 28호 서식

공급자격합성 확인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제43조에 나와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관련법률

제40조(공급자격합성확인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격합성 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격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안전기준상에 모델구분이 있는 제품에만 해당한다)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공급자격합성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격합성확인 후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자격합성 확인서를 즉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3조

관련법률

제43조(공급자격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관련 서류 비치)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격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일을 말한다)부터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2. 해당 공급자격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공급자격합성확인 제품검사 결과서(사진을 포함한다)
3.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자격합성 확인서

▢ 판매중지는 어떤 경우에 되나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거짓으로 공급자 적합성확인 표시를 한 경우 등에 판매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에 나와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관련법령

제34조(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③ 시 · 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3.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 · 진열 또는 보관을 한 경우
4.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한 경우
6.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